



위험기준 자기자본(RBC)제도 운영경과 및 변화

2021. 7.

목 차

I. RBC제도 도입배경 및 경과	1
II. RBC제도 도입기준	4
III. RBC제도 개선경과	8
IV. RBC제도 주요 위험액 변화	19
V. 지급여력제도의 향후 발전방향	24

I. RBC제도 도입배경 및 경과

1 RBC제도 도입배경

- 현행 지급여력제도는 외환위기 후 IMF와 합의에 따라 EU방식(Solvency I)을 참고한 지급여력 제도를 도입('99년)하여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도모 및 경영 안정성·효율성을 제고에 기여
 - 그러나,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와 경쟁심화 등으로 인하여 리스크 중심의 예방적·선제적 감독체계의 도입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
 - 파생상품 거래증가, 변액보험 등 투자형상품의 판매 증대로 인해 다양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노정
- ⇒ 보험사 건전성 제도도 리스크 중심으로 개편함으로써 권역간 균형발전 도모할 필요

2 현행 지급여력제도 한계점

가. 현행 고위험자산 포트폴리오의 요구자본 산출기준 미흡

- 자산별 내재된 리스크 속성을 구분하지 않고 획일적 기준(책임준비금의 4%)을 적용하여 요구자본을 산출하여, 주식, 파생상품 등 고위험자산 손실대비한 적절한 규모의 요구자본 산정 곤란

나. 자산·부채 만기구조 불일치로 인한 요구자본 산출기준 부재

- 보험사는 자산·부채의 듀레이션매칭을 통한 리스크 관리 및 적정 가용자본 확보로 시장 금리변동에 대비해야 하나 현행 제도는 금리변동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변화를 未반영

다. 상품별 리스크 속성에 따른 요구자본량 차별화 미흡

- 상품에 내재된 리스크 속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며 특히 대형사고로 인한 손실발생에 취약한 고위험상품 리스크를 저평가하여 무리한 성장전략 추구 등 재무건전성 부실화 우려

라. 변액보험의 보증리스크 및 운영리스크 산출기준 부재

- 최근 시장점유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변액보험의 최저보증리스크(GMDB, GMAB)에 대한 요구자본 산출기준 부재

* GMDB : 사망보험금을 일정수준(기납입보험료)까지 보장
GMAB : 연금개시 직전 계약자적립금을 일정수준(기납입보험료)까지 보장

- 또한 민원, 소송 등의 증대로 운영리스크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요구자본 산출기준이 없는 상태

3 위험기준 자기자본(RBC) 제도 도입추진 경과

▶ '05.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사에 내재된 리스크를 발생원천에 따라 <u>보험·금리·시장·신용·운영 리스크</u> 등 5가지로 구분하는 RBC제도 도입방안 검토
▶ '06.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스크감독자문위원회 및 업계작업반의 의견수렴 후 <u>RBC 요구자본 산출 기준 마련</u>
▶ '07.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적인 정합성을 추구하되 업계의 리스크관리실태 등을 감안하여 <u>표준 모형</u> 방식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RBC제도 도입(試案) 마련
▶ '08.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보험사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 도입(最終案) 마련</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행운영) 제도 도입 후 2년간 현행 지급여력비율과 RBC비율 중 회사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

II. RBC제도 도입기준

▶ '09.3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 **(개정이유)** 보험사 위험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Risk Based Capital) 도입('09.4월 시행)
- **(개정내용)** 보험사에 내재된 다양한 위험(자산운용리스크(금리·신용·시장리스크), 보험리스크, 운영리스크)을 보다 정교하게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의 세부산출기준 마련

1 자기자본제도 개념

- 자기자본제이란 금융사에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로 금융사가 금융소비자에 대한 지급능력 유지 목적

금융권역별 자기자본제도 현황

구 분	보 험	은 행	증 권
기준비율	지급여력비율	BIS 자기자본비율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방법	지급여력금액/지급여력기준금액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반영 리스크	보험리스크, 자산운용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시장리스크, 거래상대방리스크
규제내용	100% 미달시 적기시정조치	8% 미달시 적기시정조치	150% 미달시 적기시정조치
도입시기	'99('09년 RBC제도 시행)	'92('08년 바젤II 시행)	'97('09년 개편 시행)

2 RBC제도 특징

가. 국제적 정합성 추구

-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선진국 제도를 참고하였으며, IAIS가 제시하는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토록 설계(IAIS, '07.2월 지급여력평가 공통구조 발표)

나. 체계적인 리스크 반영

- 보험사에 내재된 다양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리스크를 시장, 신용, 금리리스크로 세분화하고 정교한 측정방법 모색

다. 업계 공동의 표준모형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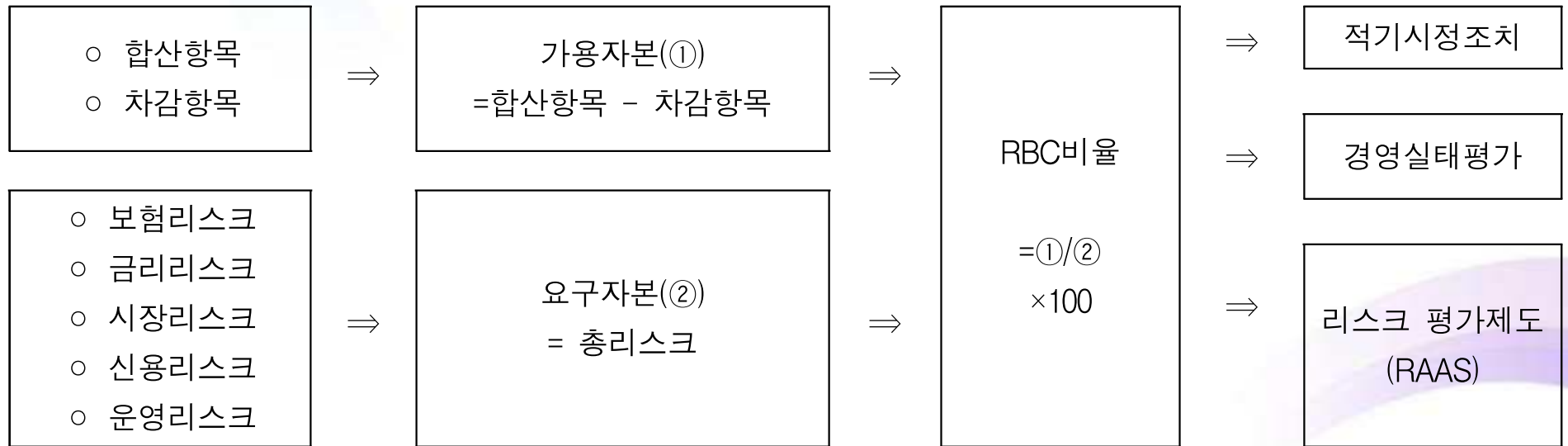
- 도입단계에서는 모든 보험사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단순한 형태의 표준모형을 도입할 필요가 있어 업계공통의 위험계수 적용(보험사가 내부모형 선택가능토록 이원화)

라. 분산효과 반영 및 목표 신뢰수준 명시

- 총 요구자본 산출 및 손보사 보험리스크 산출시 분산효과를 반영하며 국내 보험사 리스크 관리 수준, 미국 RBC제도의 신뢰수준(95%) 등을 고려하여 신뢰수준을 95%로 설정

3 RBC제도 기본구조 및 감독조치

- (RBC 제도 구조) 보험사에 내재된 각종 리스크량을 산출하여 이에 상응하는 자본을 보유토록 하는 제도로 '가용자본'과 '요구자본' 등으로 구성



- (감독조치) 요구자본에 대한 가용자본을 RBC비율로 산출하여 적기시정조치 기준, 경영실태평가(RAAS) 평가 등으로 활용

4 RBC제도 요구자본 산출

가. 개별위험액 산출기준

- 보험사에 내재된 리스크를 보험, 금리, 신용, 시장, 운영 등 5가지로 분류

개별 리스크 정의 및 결정요인

분류	정 의
보험	예상하지 못한 손해율 증가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리스크
금리	금리 변동에 따른 순자산가치의 하락 등으로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리스크
신용	채무자의 부도,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리스크
시장	시장가격(주가, 이자율, 환율 등)의 변동에 따른 자산가치 변화로 손실이 발생할 리스크
운영	부적절한 내부절차·인력·시스템, 외부사건 등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리스크

나. 총위험액(요구자본) 산출기준

- 금리과 신용간에는 완전상관관계를 설정하고, 보험, 시장, 금리·신용은 무상관관계로 설정

〈 부문간 분산효과 반영방법 〉

◆ 총요구자본 = $\sqrt{\text{보험}^2 + (\text{금리} + \text{신용})^2 + \text{시장}^2} + \text{운영위험액}$

- 금리와 신용위험액 : 완전상관(계수 1), • 보험위험액, 금리·신용위험액, 시장위험액 : 무상관(계수 0)

Ⅲ. RBC제도 개선경과

1 2011년 RBC제도 개선

가. 보험가격위험액 산출방식 개선

- 손해율 실적이 반영되는 일반손보 보험가격리스크와 같이 생명·장기손보 보험상품별 보험 가격리스크를 위험보험료와 지급보험금(발생손해액) 기준 중 큰 금액으로 설정

$$\diamond \text{ 보험가격리스크 요구자본} = \sum_{\text{보험상품별}} \text{Max}(\text{위험보험료 기준 보험가격리스크}, \text{지급보험금 기준 보험가격리스크})$$

나. 금리위험액 산출방식 개선

- 자산·부채 듀레이션갭이 없는 경우 금리위험액이 “0”으로 산출되어 금리리스크 최저요구 자본기준을 설정하고 보험부채 금리민감도를 잔존만기별로 세분화

- ◆ (최저금리위험액) 생보사는 중위험계수 수준(1.5)을 적용하고 손보사는 저위험계수 수준(0.75)을 적용
- ◆ (금리확정형 금리민감도) 잔존만기별로 6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보험계약 만기 특성을 정교하게 반영
* 3년 미만, 3~5년, 5~10년, 10~15년, 15~20년, 20년 이상
- ◆ (금리연동형 금리민감도) 보험사의 실질 금리개정주기(생보 : 0.45년, 손보 : 0.51년)를 고려하고 자산과 부채 기준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변동금리부 자산의 금리민감도(0.71)를 동일하게 적용

다. 변액보험 보증위험액 산출방식 개선

□ 요구자본 산출대상을 쏘보증 종류로 확대하고 GMAB의 요구자본도 산출기준 정교화

◆ (GMAB 위험액) = (장래지출 예상액 - 장래수입 예상액) - 보증준비금

- 장래지출 예상액 = \sum 보험계약별 익스포져 × 보험금 위험계수
- 장래수입 예상액 = \sum 보험계약별 익스포져 × 수수료 위험계수

◆ (GMDB 위험액) = \sum 익스포져 × 보험위험계수

- 익스포져 : [(최저보장금부 - 계약자적립금) + 계약자적립금의 30%] × $qx+t$ × v
- 보험위험계수 : 변액종신 14.8%(사망보험), 변액연금 40.2%(저축성보험)

2 2012년 RBC제도 개선

가. 자본계층화제도 도입

□ RBC제도에 자본계층화를 도입하여 자본요건(가용성, 영구성, 후순위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본자본, 일부요건 미충족시 보완자본(기본자본 100% 이내)으로 분류

구 분	현 행	개정(안)
자본 계층화	지급여력금액 : 1.합산항목 2.차감항목 3.자회사 <u>자본과부족</u>	지급여력금액 : 1. 기본자본 2. 보완자본 3. 차감항목 4. 자회사 <u>자본부족</u>
보완자본 한도	관련규정 없음	기본자본의 100% 한도

나. 보험위험액 산출기준(상품별→보장별) 등 개선

- 보험위험액 산출기준을 상품별에서 보장별로 변경, 지급보험금 기준 산출방식 삭제 등 보험 위험액 산출식을 개선

$$\diamond \text{ 보험가격위험액} = \left\{ \sum_{\text{보험보장구분}} (\text{보유위험보험료} \times \text{조정위험계수}) \right\} \times \max\left(1, \frac{50\%}{\text{보유율}}\right)$$

- 가계대출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주택담보 대출 및 소매대출의 신용위험계수를 상향 (주택담보대출 : 1.4% → 2.8%, 소매신용대출 : 3% → 4%)
- 금리리스크 산정시 최근 투자가 증가하는 구조화 예금 등에 대하여 '0'의 듀레이션이 아닌 채권평가기관에서 부여한 듀레이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

3 2013년 RBC제도 개선

가. 정부보증 SOC 등에 대한 위험계수 개선

- 정부가 SOC 사업 운영에 필요한 현금흐름을 전액 보증하거나, 사업 해지시 대출원금을 보증하는 경우에는 무위험(위험계수 0%)으로 적용토록 개선
 - 정부의 결손보전이 되는 공공기관 사업에 대한 익스포저에 한해 위험계수 0% 적용

나. 금리역마진 위험액 신설

□ 보험료적립금에 이자율차를 곱하여 산출하는 금리역마진위험액을 신설

◆ 금리역마진위험액 = $\text{Max}\{ \text{보험료적립금} \times (\text{적립이율} - \text{자산부채비율} \times \text{시장금리}) \times 0.5, 0\}$

- 적립이율 = 산출시점의 순보식 보험료적립금 기준 가중평균 적립이율
- 자산부채비율 = 운용자산 ÷ 순보식 보험료적립금
- 시장금리 = 직전 1년간 국고채(5년) 월말 금리의 평균 + $\text{max}\{\text{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 산업위험스프레드, 회사위험스프레드}\}$

4 2014년 RBC제도 개선

가. 일반손보 보험위험액 산출기준 개선

- IAIS 권고기준을 반영한 99% 신뢰수준에서 기본위험계수를 산출하고, 정교한 보험가격 위험액 산출을 위해 일반보험(4→8개) 및 자동차보험(3→5개)의 상품구분 확대
- 준비금 위험계수 신뢰수준을 99%로 상향하고, 보험가격 위험액 위험계수의 상품구분과 동일하게 일반보험은 8개, 자동차보험은 5개로 상품구분 확대

나. 신종자본증권 위험계수 조정

- 신종자본증권이 주식과 채권의 중간적 성격인 점을 감안, 주식과 채권의 중간 수준의 위험계수가 적용되는 PF와 같이 특수금융의 한 종류로 추가

신용등급	AAA	AA+~AA-	A+~BBB-	BBB-미만	무등급
일반채권	0.8%	2%	4%	6%	4%
PF	1.6%	4%	8%	12%	8%
신종자본증권	상 동				

다. 금리연동형상품 듀레이션 산정방식 개선

- 금리연동형상품 듀레이션을 공시이율 및 최저보증이율간 차이에 따라 현행 2단계에서 10단계로 세분화
 - 또한 현행 제도의 공시이율이 아닌 “공시기준이율”과 최저보증이율간 비교토록 개선

라. 통계적 신뢰수준 상향 및 상관계수 개선

- 금리·신용위험액의 통계적 신뢰수준을 상향(95%→99%)하여 보험사 건전성 기준을 강화
 - 또한 보험/금리/신용/시장리스크요인간 상관계수에 “0.25 또는 0.5”를 추가(현행은 “0 또는 1”)

5 2015년 RBC제도 개선

가.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위험계수 신설

- 후순위채권 등 조건부자본증권을 '기타자산'으로 보아 8% 위험계수를 일괄 적용하고 있어 자본증권 형태(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 및 신용등급에 따라 1.2%~12% 위험계수로 차등화

나. 부동산 수익증권 및 업무용 부동산 위험계수 개선

- 현행은 부동산·실물자산에 투자한 수익증권 익스포저에 대해 12%의 위험계수 일괄 적용하고 있어 수익증권을 구성하는 자산별(예금·채권·주식) 위험계수(0.8%~12%)를 구분·개선
- 업무시설과 투자사업용 부동산을 구분, 위험계수 차등(현행 6%→ 업무시설용:4%, 투자사업용:6%)

다. 선급비용의 가용성 여부 및 KP물 신용등급 기준 개선

- 현행 선급비용은 시장성 유무와 상관없이 가용자본에서 차감하나, 시장성이 있는 선급비용은 가용자본 차감법 대신, 위험계수(12%)를 적용하여 요구자본에 합산
- 현행에는 KP물 신용리스크 측정시 개별 채무에 부여된 해외 신용등급을 사용하나, 동순위의 원화채권에 대한 국내 신용등급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6 2016년 RBC제도 개선

가. 연결재무제표 기반 지급여력제도(RBC) 도입

- 자회사 리스크관리 실패로 인한 보험사 파산방지 및 국제기준과 부합한 연결RBC 도입
 - **(연결대상 보험사)** 지배회사(보험사)와 자회사(보험사)간 내부거래가 제거된 연결재무제표를 기초로 지급여력비율 산출
 - **(非연결대상 보험사, 非보험 금융사)** 개별재무제표로 해당 업권 법령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가용·요구자본 산출 후 지배회사의 가용·요구자본 합산 후 RBC비율 계산
 - **(非금융사)** 비금융사에 출자한 금액에 대해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간주(출자금액 × 8~12%) 하는 방식으로 지급여력비율 계산(현행방식 유지)

나. 신용공여 약정 미사용액 등에 적용할 신용환산계수 제정

- 미사용 대출약정 등의 난외항목을 신용공여액에 포함하여 신용공여 관리체계 개선
 - 신용공여 한도약정시, 미사용액에 대해 신용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신용공여 금액 포함(신용공여금액 = 기실행 대출잔액 + 미인출한도 × 신용환산율(0~100%))

7 2017년 RBC제도 개선

가. 퇴직연금 리스크 측정범위 확대

- 퇴직연금 특별계정 중 원리금보장형에 대해 현행 운영위험액 외 신용·시장위험액 추가 산출

나. IFRS17 시행 대비한 LAT 추가적립액 일부를 지급여력으로 인정

- IFRS17 시행에 대비하여 LAT 제도를 강화하되 LAT 평가로 인한 추가적립액의 일부를 지급여력비율 산출시 지급여력금액으로 인정하되 단계적으로 하향

다. RBC 금리역마진위험액 폐지

- LAT제도 할인율 강화로 LAT와 역할이 중복되는 금리역마진위험액은 폐지

라. IFRS17 시행 대비한 부채 듀레이션 단계적 강화 등

- 보험계약 실제만기까지 현금흐름을 추정하는 IFRS17 대비, 보험부채 듀레이션 잔존만기 구간을 현행 20년에서 30년까지 확대, 금리변동계수를 최근 금리수준을 반영(1.85% → 1.5%)
- 연동형보험 공시이율이 최저보증이율보다 하락가능한 리스크 반영을 위해 현행 듀레이션 산출시 적용하는 공시기준이율에서 신용위험스프레드를 차감하여 IFRS17 대응

8 2018년 RBC제도 개선

가. 가계대출 RBC 위험계수 상향

- 소매대출*의 위험계수를 은행권 수준에 맞게 상향조정하여, 보험권 가계대출 증가로 인한 리스크 사전예방(풍선효과 차단)

* 개별채무자에 대한 익스포져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개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나. 상업용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해 부채상환비율 반영

- 현행은 상업용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해 LTV만 반영하여 부동산 담보가치를 평가하고 있으나, 부채상환비율(DSCR : Debt Service Coverage Ratio)을 추가고려토록 위험계수 조정

* 기업대출 중 '원리금상환이 임대수익에 연계된 상업용부동산 (선순위)담보대출'의 부채상환비율이 1.4 이상인 경우, 전액 담보된 익스포져의 위험계수는 거래상대방에 적용되는 위험계수와 4.5% 중 낮은 위험계수를 적용가능

다. 신용위험액 산출기준 명확화

- '17.6월, 신용파생거래가 위험경감수단으로 인정되었으나, 신용파생거래 특성에 맞는 신용 위험액 산출기준이 없어 준거자산 신용등급에 따라 환산율을 적용하여 익스포져 산출
-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된 파생결합증권의 내재파생상품도 신용위험액 산출대상으로 명확화

9 2020년 RBC제도 개선

가. 공동재보험 제도 도입에 따른 RBC제도 보완

- 공동재보험을 통해 원수사가 금리위험을 재보사에 전가하여 보험부채 익스포저가 감소하므로 금리위험액 축소되나, 금리위험을 인수한 재보험사의 경우 금리위험액 확대
 - 또한 원보험사는 공동재보험 거래에 대해 재보험사 신용도에 따른 신용위험 반영

나. RBC 금리위험액 내부모형 승인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 현행에 RBC 금리위험액 산출시 공통기준을 적용한 표준모형을 적용하나, 보험사가 RBC 금리위험액 산출시 자체통계를 활용토록 내부모형 승인기준 및 절차마련

다. RBC 금리위험액 산출시 금리파생상품 익스포저 포함

- 보험사가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 이용시 이를 반영하는 RBC 금리위험액 산출기준 정비

< RBC 상 금리위험액 산출기준(안) >

◇ 금리위험액 = Max(만기불일치위험액, 최저금리위험액)

○ 만기불일치위험액 = | 금리부자산 익스포저 × 금리부자산 듀레이션 - 금리부부채 익스포저 × 금리부부채 듀레이션 | × 금리변동계수(1.5%)

⇒ (금리위험액 측정범위) '금리부자산'에 금리부 실물자산 뿐만 아니라 헤지회계 적용 금리파생상품을 포함

10 2021년 RBC제도 개선

가. 부채 듀레이션 · 금리변동계수 산출기준 정비

- 현행 RBC의 부채 듀레이션이 실제보다 작게 산출됨에 따라 금리위험액 과소측정 우려가 있어 듀레이션 산출기준을 강화 및 최근 금리수준을 고려한 금리변동계수 기준 정비

나. 단기 외환 헤지계약 관련 시장위험액 산출기준 마련

- 현행에는 K-ICS와 달리 단기 외환 헤지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격 변동 및 헤지효과 감소에 대한 위험액을 측정하지 않고 있어
 - 단기 외환헤지 파생계약에 대한 K-ICS의 위험액 산출기준을 준용하여 현행 RBC 제도에서 관련기준 신설

- 계약기간 1년 미만 단기 외환 헤지 계약에 대해 갱신 시 환율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 위험을 측정
- 외환헤지 파생계약의 외환위험 경감효과를 반영할 경우 파생계약 잔존만기가 1년 미만인 경우 헤지 효과를 일부만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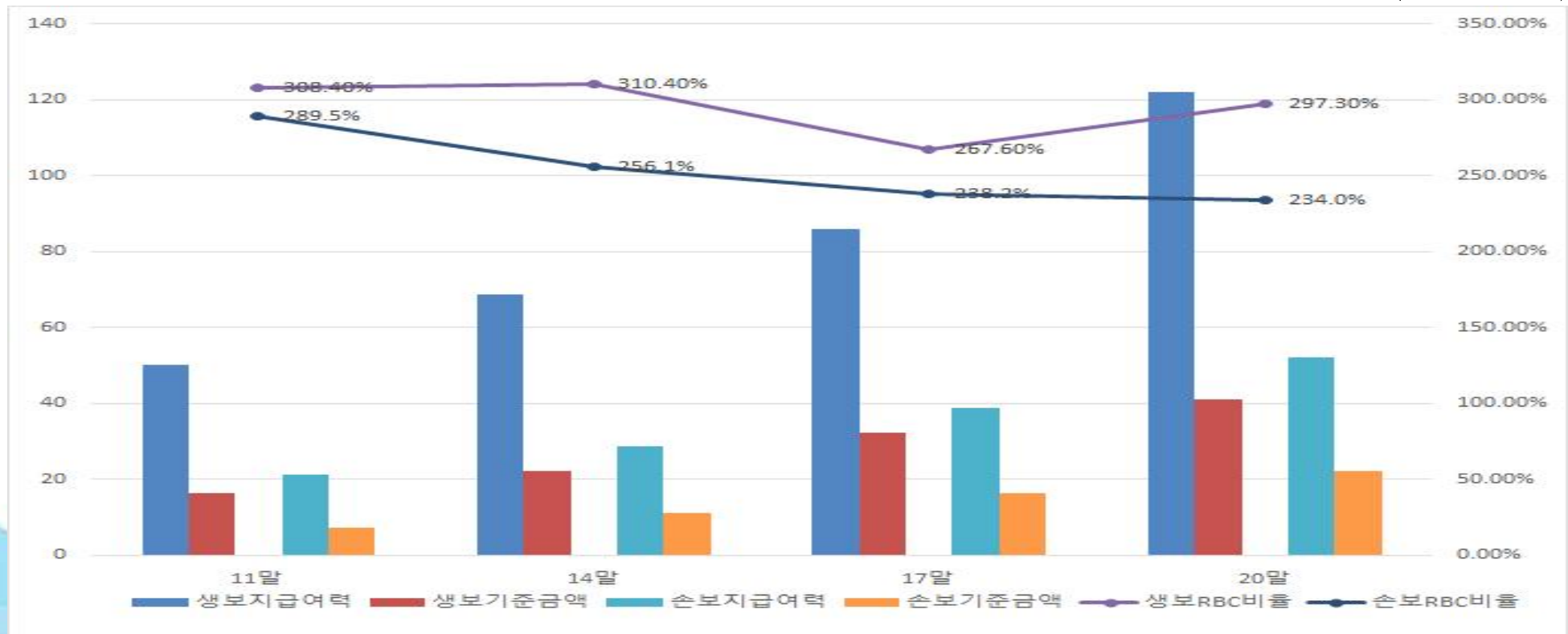
IV. RBC제도 주요 위험액의 변화

1 위험기준 지급여력 및 기준금액의 변화

- '11년 RBC제도 본격시행 후 RBC제도가 지속강화되었으나 생보는 안정적인 RBC비율을 유지
손보는 RBC비율 하락추세(대체투자증가, 신뢰수준 상향 등으로 신용위험액이 급증에 기인)

RBC비율, 지급여력 및 기준금액 추이

(단위 : 조원)



2 RBC제도하의 보험위험액 변화

□ (생보) 장애 및 입원담보의 경우 RBC제도 시행 후 점진적으로 위험액이 감소

- 수술·진단 담보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실손 담보의 경우 지속적으로 위험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생보사 주요 보험위험액

(단위 : 십억원, %)

구분	12말		14말		17말		20말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사망	536	15	628	15	683	16	646	14
장애	302	8	339	8	320	7	255	5
입원	285	8	298	8	249	6	217	4
수술진단	2,320	64	2,561	63	2,687	62	3,093	64
실손	41	1	80	2	214	5	393	9
기타	151	4	181	4	183	4	193	4
합계	3,635	100	4,087	100	4,336	100	4,797	100

□ (손보) 가격위험은 장기보험 및 일반보험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 준비금위험은 RBC제도 시행 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손보사 주요 보험위험액

(단위 : 십억원, %)

구분	11말		14말		17말		20말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가격위험	4,809	71	7,041	81	9,294	82	12,083	82
장기	2,104	31	2,999	35	4,295	38	6,106	42
일반	273	4	1,373	15	1,730	15	2,067	14
자동차	1,880	28	2,002	23	2,447	22	2,875	19
보증	552	8	667	8	822	7	1,035	7
준비금위험	2,013	29	1,612	19	2,062	18	2,602	18
일반	1,295	19	1,039	12	1,348	12	1,753	12
자동차	713	10	568	7	709	6	842	6
보증	5	-	5	-	5	-	7	-

3 RBC제도하의 금리위험액 변화

- (생보) RBC제도 초기 단순 듀레이션갭은 △1.9년 차이가 있었고 매칭률도 74.7% 불과하였으나, K-ICS 시행 대비, 장기채 매입 등을 통해 듀레이션갭이 감소하여 매칭률도 개선
- (손보) 장기손해보험의 판매확대에 기인하여 금리부부채의 단순 듀레이션(3.8년→11.4년)이 크게 증가하여 여전히 매칭률이 저조한 상태로 금리변동시 자본변동성 확대 우려

생보사 및 손보사 금리위험액

(단위 : 조원, 년, %)

구분		11말	14말	17말	20말	
생보	자산	익스포저(a)	289.0	452.7	574.6	607.7
		듀레이션(b)	4.8	4.9	7.6	9.4
	부채	익스포저(c)	277.3	432.7	546.3	607.7
		듀레이션(d)	6.7	5.9	7.9	10.0
	차이	단순갭(b-d)	△1.9	△1.0	△0.3	△0.6
		매칭률(a*b/c*d)	74.7	87.2	101.5	103.0
손보	자산	익스포저(a)	53.6	109.5	158.2	194.0
		듀레이션(b)	3.3	4.7	7.4	9.7
	부채	익스포저(c)	55.8	110.2	157.1	186.3
		듀레이션(d)	3.8	4.8	8.1	11.4
	차이	단순갭(b-d)	△0.5	△0.1	△0.7	△1.7
		매칭률(a*b/c*d)	83.8	97.0	91.7	88.2

4 RBC제도하의 신용위험액 변화

- (생보) RBC제도 도입 후 무위험자산 비중 유지, AAA등급자산 비중 감소, 무등급자산 비중 증가 등을 통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관리
- (손보) 생보사 비교시 자산운용전략 측면에서 수익성 측면을 보다 고려하는 것으로 분석

생보사 및 손보사 신용위험액

(단위 : 조원, %)

구분	11말		14말		17말		20말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생보	무위험	122.8	51.1	211.7	53.4	279.4	53.6	349.3	52.9
	AAA	77.1	32.1	103.1	26.0	128.1	24.6	135.7	20.6
	AA+~AA-	25.3	10.5	44.6	11.3	60.2	11.6	83.3	12.6
	A+~BBB-	5.7	2.4	10.1	2.6	12.7	2.4	19.0	2.9
	BB+이하	0.7	0.3	1.7	0.4	1.5	0.3	1.5	0.2
	무등급	8.7	3.6	24.9	6.3	39.0	7.5	71.0	10.8
	합계	240.3	100.0	396.1	100.0	520.9	100.0	659.8	100.0
손보	무위험	14.6	21.2	37.5	30.6	58.3	32.8	82.5	33.9
	AAA	24.6	35.5	33.5	27.4	48.2	27.1	55.1	22.7
	AA+~AA-	19.8	28.6	30.0	24.5	36.6	20.6	51.8	21.3
	A+~BBB-	4.7	6.8	6.8	5.6	6.2	3.5	7.8	3.2
	BB+이하	0.1	0.1	0.3	0.3	0.4	0.2	0.5	0.2
	무등급	5.4	7.8	14.2	11.6	28.1	15.8	45.4	18.7
	합계	69.2	100.0	122.3	100.0	177.8	100.0	243.1	100.0

5 RBC제도하의 시장위험액 변화

- (생보) 변액보험을 판매하는 생보사의 경우 변액보증위험액 증가 등으로 시장위험액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17년도 이후 해외투자 증가로 외환위험액 급증
- (손보) 생보사와 비교하면 변액보험을 판매하고 있지 않은 손보사의 경우 시장위험액 비중은 매우 미미하며 손보사도 최근 해외투자 증가로 외환위험액 증가

생보사 및 손보사 시장위험액

(단위 : 십억원, %)

구분	11말		14말		17말		20말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생보	주식	74	5.3	55	2.7	509	18.3	876	14.3
	금리	46	3.3	125	6.2	55	2.0	150	2.4
	외환	221	15.8	221	10.9	424	15.2	2,125	34.8
	변액	1,058	75.6	1,620	80.2	1,798	64.5	2,967	48.5
	합계	1,399	100.0	2,021	100.0	2,786	100.0	6,118	100.0
손보	주식	51	22.0	34	14.2	56	18.2	90	15.4
	금리	74	31.8	57	23.7	48	15.3	66	11.3
	외환	107	46.2	149	62.1	206	66.5	429	73.3
	합계	232	100.0	240	100.0	310	100.0	585	100.0

V. 지급여력제도의 향후 발전방향

1 새로운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배경

가. 보험부채 시가평가 제도로의 변경

- '23년 보험부채 시가평가 근간의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시행되며 보험핵심원칙(ICP)에 의거하여 자산·부채 평가기준과 지급여력 산출방식의 상호의존성 및 일관성 유지 필요

나. 현행 RBC 제도의 한계점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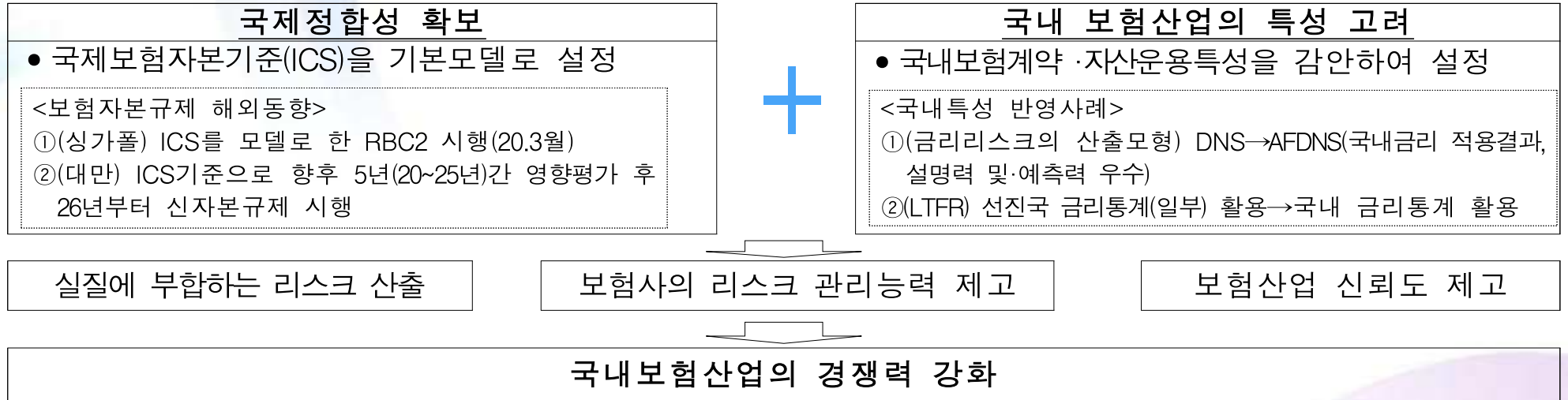
- 현행 RBC제도의 경우 경제적·계리적가정 변화에 따른 자본변동성을 적절히 측정하지 못하며 자산·부채 평가가 일관되지 않아 건전성 착시효과로 실질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유인 부족

다. 보험 자본규제의 패러다임의 전환

- 보험권역의 자본규제의 국제적인 패러다임이 자산·부채 완전시가평가 기반으로 전환
 - EU의 경우 시가평가기반의 지급여력제도를 '16년에 시행하였고, IAIS는 국제적 통일된 보험 자본규제 마련을 목표로 시가평가 기반의 지급여력제도인 ICS를 제정
 - * '19년말 최종기준을 채택후 5년간 모니터링을 거쳐 '25년부터 IAIG에 의무적용

2 새로운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방향 및 기대효과

가. K-ICS 도입방향



나. K-ICS 기대효과

구 분	As Is(RBC)	To Be(K-ICS)
보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기적 성장중심 경영전략 √국제자본규제와 RBC 차이⇒ 국제영업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 관점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 √국내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글로벌 경쟁력 확대
감독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전성 착시로 인해 건전성 감독목적 달성에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전성 감독의 실효성 제고 √국가 대외신인도 제고(IMF 금융부문 평가 등)
소비자 투자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전성 착시 등 정보비대칭성으로 정보이용자의 합리적 선택 곤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적 실질이 반영된 지급여력 정보를 통해 합리적 선택가능(역선택 방지)